

2023년도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 안내

□ 관련법령

- (법 제54조의2제2항)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법령
- (시행령 제44조의3)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사항에 관한 법령

□ 교육개요

- 교육대상 : 관할관청에 신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신고된 자
- (기 한)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
- 교육일정

구분	회수	접수일정 (시작일 09:00 ~종료일 23:59)	교육일자 (시작일 09:00 ~종료일 23:59)	교육방법
신규 교육 (16시간)	1차	02.06(월) ~ 02.15(수)	02.20(월) ~ 03.05(일)	온라인
	2차	05.01(월) ~ 05.10(수)	05.15(월) ~ 05.28(일)	
	3차	09.04(월) ~ 09.13(수)	09.18(월) ~ 10.01(일)	
	4차	11.06(월) ~ 11.15(수)	11.20(월) ~ 12.03(일)	

*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재 안내

** 교육 승인 및 안내문자는 접수 종료 후 2일 이내 일괄 안내 예정

○ 교육과목 및 수수료

구분	교육과목	교육수수료
신규교육 (16시간)	■ 교통관련법규 ■ 운전자관리 ■ 교통안전관리규정 ■ 교통사고조사분석 ■ 교통안전관리론 ■ 자동차관리 ■ 운수회사안전관리 ■ 운행관리	94,000원

□ 교육신청방법

- 교육신청 : 희망하는 교육방식 및 일자로 개별신청 (온라인)
- 사 이 트 :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 (edu.kotsa.or.kr)
- 결제방법 :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(온라인결제만 가능)
- 필수서류 : 교통안전담당자 **지정확인서*** (담당자 지정 여부 확인용)

*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신고 후 관할관청에서 회신한 승인 문서

[교육 신청 절차]

1단계 로그인/회원가입	2단계 교육과정 신청 및 결제	3단계 교육대상 확인 및 승인	신청완료
교육사이트 TS-배움터 (edu.kotsa.or.kr)	신규교육 (대상) 신규 교통안전담당자 (서류) 담당자 지정확인서 (비용) 94,000원	교육대상 확인 (공단) 첨부서류(지정확인서) 등 대상자 여부 확인 ↓ ① 대상자일 경우 승인 => 접수 종료 후 2일 이내 안내문자 발송 ② 서류 누락, 비대상자 => 별도 연락하여 서류 보완 또는 취소안내	교육수강 교육시간의 100% 수강 시 수료증 출력 가능
계정찾기 아이디,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, '아이디/비밀번호 찾기' 기능을 통해 검색 가능	보수교육 (대상) '20년도에 담당자로 지정된 자 (서류) 담당자 지정확인서 (비용) 70,000원		
	주의사항 * 서류는 '신청정보등록' 시 지정확인서 란에 첨부 * 현장교육 신청 시 지역 한번 더 확인 하기		

※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별첨1

교통안전담당자 교육 FAQ

NO	자주하는 질문	답변
1	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?	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(인·면허 기관)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2	지정 신고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?	「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제17호 서식 활용하시면 됩니다.
3	교통안전담당자로 회사대표 지정/중복 지정/위탁 가능한지?	자격요건 충족 시 가능 합니다. 단,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.
4	주사무소와 영업소가 있는데 주사무소에만 담당자 지정하면 되는지? (법인등록번호는 동일, 사업자등록번호 여러개인 경우)	주사무소에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하시면 됩니다. 단,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대한 교통안전담당자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.
5	'22년도에 보수교육 받았는데, 올해도 교육안내 공문을 받았으면 교육받아야 되는지?	보수교육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2년마다 1회씩 받으면 됩니다.
6	교육수료여부 및 수료증 요청	한국교통안전배움터 접속 및 로그인 후 ' 마이페이지-나의 학습현황 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* 단, '19년도 수료증의 경우 공단으로 문의
7	사이트에 접속했으나, 교육신청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.	교육신청버튼은 ' 교육접수기간 '에만 활성화됩니다. 교육 접수일정 확인 후 해당기간에 다시 접속 바랍니다.
8	교육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.	'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'→'교육대상여부 확인'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 * 신규교육 대상자는 확인 불가 *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